

공고 제2026-1호

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사)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: 총 4명

복지일자리(참여형) : 4명

1. 근무기간 : 2026년 4월~12월(9개월)

근무시간

- 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월 56시간

보수

- 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월577,920원(고용·산재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
*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근무내용 : 환경정화, 장애인주차구역계도, 편의시설모니터링 등

근무지 : 시청,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, 복지시설, 공공기관, 비영리단체 등

2. 모집기간 : 2026. 03. 26.(목)~04. 06.(월) 09:00~18:00 / 토·일 제외

3 신청자격 : 공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 - 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 '26년 신청자의 경우, '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-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- 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 -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 - 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
4.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5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- ① 참여신청서[서식1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-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2] 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3]
 - 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
 -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등록여부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 은 접수 읍·면·동에서 확인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구 분	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자격증 소지자	관련 자격증 사본 1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졸업예정자	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(졸업예정증명서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여성가장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사항</td> <td colspan="2"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9">선택사항</td> <td>부모 부양시</td> <td>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</td> </tr> <tr> <td>가출·행방불명</td> <td>실종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장애</td> 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 </tr> <tr> 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 <td>의사의 진단서</td> </tr> <tr> <td>군복무</td> <td>복무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학교 재학</td> <td>재학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교도소 입소</td> 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 </tr> <tr> <td>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 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이혼소송 제기</td> 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가족 생계 부양</td> <td>통·반장의 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첨 부 서 류		공통사항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	선택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군복무	복무확인서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
	구 분	첨 부 서 류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통사항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선택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																								
	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																								
	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군복무	복무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
	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혼소송 제기		이혼소송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 후유증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'23~'25) 이내 사용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.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- ① 미혼여성이거나
 -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 -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-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6. 접수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방문 접수

7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-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공제 등

-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* 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 「**사회복지사업법**」 제35조의2(종사자)
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* 「**노인복지법**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노인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○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(최종합격자 제외).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-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시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팩스(041-840-3712)로 제출(제출 후 확인 전화 必)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되,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.
- 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임.

- 2026년도 복지일자리(참여형) 일자리는 참여자 모집, 선발, 배치 후 민간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.
- 「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」 등 제출 서식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구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사)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총무팀 (☎ 881-995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6일

사)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

